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01호로 2024년 9월 13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보험가입, 가입대상자, 보험계약의 당사자(안 제4조 ~ 제6조)

다. 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 제9조)

라.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10조 ~ 제12조)

마.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행규칙(안 제13조 ~ 제1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1)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학교 안팎으로 활동성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관내 등록된 장애청소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대비, 상해단체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해보험을 지원받는 장애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보험가입 및 가입대상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보험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고려할 부분과 보험료의 보장기준을 제시하였으며,
-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

## ○ 검토결과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겪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족사고(넘어짐, 미끄러짐)와 교통사고, 추락사고(낙상사고 포함)가 뒤를 잇고 있음. 건장한 성인에 비해 체력과 균형 감각 부족으로 신체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워 발생한 사고로 추측됨.

## □ 장애인들의 사고 종류

사고 종류	사고 경험자 응답자 백분율		
	2020년	2021년	2022년
끼임사고	1.8	7.3	2.9
폭행사고	1.2	0	0.6
화재사고	0	1.2	0
레저사고	4.7	1.5	2.4
추락사고	18.0	10.0	12.0
교통사고	20.3	17.2	16.7
실족사고	50.7	59.0	55.1
기타사고	3.3	3.8	10.3

- 청소년 시기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체적 변화 등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동작의 서투름은 자칫 부주의로 인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각종 사고는 의료비와 직결되어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앞서 기술한 문제의 대비책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애인들의 상해보험 가입은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거부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원활한 보험 가입에 제약 사항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1)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험가입 청약 거절 등의 부당한 차별의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보험가입은 국가가 아닌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사적 계약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임.

## □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거부 경험 및 유형

생명보험 종류	유형별 보험 거부 경험자 백분율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보험	28.8	21.8	34.0
연금보험	4.8	2.6	0
상해보험	48.2	35.6	32.5
어린이보험	16.6	25.9	28.6
교육보험	1.0	0	1.6
기타	0.6	14.1	3.3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마음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청소년에 필요한 보장범위, 보장금액 등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보험기관과 피보험자 양자 간의 보험금 청구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피보험자 자격기준을 정확히 하고 보험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은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자치구는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2)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조정 완료됨.
- 따라서 우리 구의 보험료 부담으로 장애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되는 해당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2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